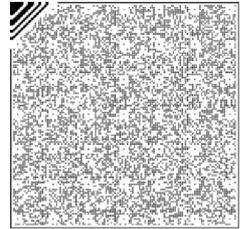




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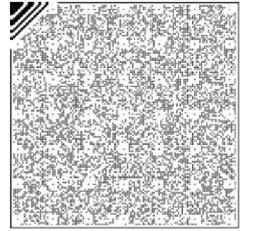


수신 해당 적치물 소유자 귀하
(경유)

제목 도로구역 내 불법시설물 철거 계고 및 원상회복 요청(양주시 봉양동 615-14)

1.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.
2.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 3호선 도로구역 내 (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15-14번지)에 귀하께서 무단으로 **불법적치물(컨테이너)**을 적치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및 도로구역 훼손 등 도로 유지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3. 이에 따라, 우리 사무소에서는 해당 **불법적치물**을 방치할 경우 도로 유지·관리 및 도로 이용자 민원발생 등으로 현저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**2024년 3월 8일까지 자진철거 등의 조치**를 취할 것을 계고하니,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만약, 위 기한까지 대상 시설을 정비(철거 등)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도로법」 제114조 (벌칙)에 의거, 고발 등 행정조치는 물론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(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)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사무소(불법T/F팀 ☎031-820-1724,1744)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

붙임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. 끝.



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



직원 **김효식** 주무관 **조한근** 도로안전운영 전결 2024. 2. 20.
 과장 **한병동**
 협조자
 시행 도로안전운영과-1530 (2024. 2. 20.) 접수
 우 11796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(용현동)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 / <http://www.molit.go.kr/srocm>
 과
 전화번호 031-820-1724 팩스번호 031-847-7680 / tublenc3@molit.go.kr / 비공개(6)